다자녀가구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구]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비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해 다자녀가구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출산할 시에는 출산축하금이 지급되고, 영유아를 위한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주택분양, 임대주택 입주, 주택마련을 위한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등에 있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우선입소 혜택, 보육료 지원, 학비 지원, 전기료·도시가스·난방비 감면 혜택, 수목원·휴양림 이용료 감면, 철도운임 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세액공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등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1
1. 다자녀가구 개관 4
1.1. 다자녀가구의 개요 4
1.1.1. 개념 및 소개 4
2. 출산 지원 6
2.1. 출산축하금 지원 6
2.1.1. 출산축하금 지원안내 6
3. 주거 지원 8
3.1. 주택특별공급제도 8
3.1.1. 주택특별공급 제도안내 8
3.2. 임대주택 우선공급 10
3.2.1.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10
3.2.2.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13
3.3.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16
3.3.1. 주택구입자금 대출 16
3.3.2. 전세자금 대출 19
4. 양육 및 교육 지원 21
4.1. 양육 지원 21
4.1.1. 어린이집 이용시 혜택 21
4.1.2.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23
4.2. 교육 지원 26
4.2.1. 국가장학금 지원 26
4.2.2. 학자금 대출 29
5. 공공요금 감면 32
5.1. 전기 및 도시가스 등 요금 감면 32
5.1.1. 전기료 감면 32
5.1.2. 도시가스요금 감면 32
5.1.3. 난방비 감면 34
5.2. 공공시설 요금감면 36
5.2.1. 수목원 등 이용료 감면 36
5.2.2. 철도운임 할인 37
5.2.3.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38
6.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 42
6.1. 자동차 취득세 감면 42
6.1.1. 자동차 취득세 경감 42
6.2. 세액공제 44
6.2.1. 자녀세액공제 44
6.3.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46
6.3.1.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이란? 46

1. 다자녀가구 개관

1.1. 다자녀가구의 개요

1.1.1. 개념 및 소개

다자녀가구의 개념

다자녀가구란?

▪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은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 법령이나 정책 또는 지방정부별로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정의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제4호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우선입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라목 및 마목의 세대원에 해당하는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 또는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손자녀(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손자녀를 말함)를 둔 경우 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

다자녀가구 콘텐츠 소개

다자녀가구 콘텐츠 제공 정보(분야)

▪ 『다자녀가구』 콘텐츠에서는 다자녀가구의 지원제도 등 다음의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분야	세부내용
다자녀가구 개관	▪ 다자녀가구의 개념
출산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
주거 지원	▪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제도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 ▪ 주택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양육 및 교육 지원	▪ 어린이집 우선이용 혜택 ▪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혜택 ▪ 국가장학금 지원 ▪ 학자금 지원
공공요금 감면	▪ 전기료 감면 ▪ 도시가스 요금감면 ▪ 난방비 감면 ▪ 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 철도운임 할인 ▪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	▪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자녀세액공제제도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2. 출산 지원

2.1. 출산축하금 지원

2.1.1. 출산축하금 지원안내

출산축하금(장려금) 지급

지원대상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

> ※ "다자녀가구" 지원대상의 범위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별로 다를 수 있고, 또한 지방정부별로 추가적인 지원을 각각의 지원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기준은 관련 기관 및 각 지역의 지방정부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출산축하금제도는 각 지방정부별로 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아이사랑 홈페이지 참조).

▪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며, 일시지급 또는 분할지급됩니다(아이사랑 홈페이지 참조).

▪ 출산축하금제도는 각 지역별로 실시 여부,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등에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출산축하금 지원여부 알아보기

※ 임신, 육아에 대한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아이사랑 홈페이지 접속-출산-출산지원금> 을 통해 거주하는 지역에서 출산축하금 제도를 시행하는지의 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출처: 아이사랑 홈페이지>

신청방법

▪ 자녀의 출산으로 출산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관할 지방정부에 지원제도 실시여부를 확인하신 후, 주민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아이사랑 홈페이지 참조).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란?

임신한 경우 지원하는 엽산제·철분제, KTX 특실 할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그리고 자녀를 출산한 뒤 출생신고와 함께 제공하는 전기료 감면, 도시가스료와 지역난방비 감면, 각종 수당과 해산급여(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및 출산비용(여성장애인의 경우) 지원 등 정부의 출산지원서비스와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 제2조 및 제3조 참조). 출생자 주소지 주민센터로 직접 문의 또는 방문해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해 보세요~

3. 주거 지원

3.1. 주택특별공급제도

3.1.1. 주택특별공급 제도안내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지원개요

▪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③ 특별공급이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이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1회에 한하여 별도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10%(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해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

> ※ 다자녀 가구의 주택특별공급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청약Home 홈페이지-청약제도안내-특별공급-다자녀가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청약Home 홈페이지>나 전화(☎ 1644-7445)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제도를 통하여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세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 제3항, 제48조, 별표 2 및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4조제1호).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요건</td><td>▪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 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해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td></tr>
<tr><td>입주자저축 요건</td><td>▪ 국민주택 특별공급: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 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다음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였을 것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단위 : 만원)
<table>
<tr><th>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 제외지역</th></tr>
<tr><td>85제곱미터 이하</td><td>300</td><td>250</td><td>200</td></tr>
<tr><td>102제곱미터 이하</td><td>600</td><td>400</td><td>300</td></tr>
<tr><td>135제곱미터 이하</td><td>1,000</td><td>700</td><td>400</td></tr>
<tr><td>모든 면적</td><td>1,500</td><td>1,000</td><td>500</td></tr>
</table>
※ 위 표에서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td></tr>
</table>

▪ 다자녀가구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이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의 주택을 특별공급 받고자 할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2항 및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8조제1항 본문).

선정기준

▪ 위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중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수, 영유아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해당지역 거주기간,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등의 배점항목에 대하여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6조제1호 및 별표 1).

> ※ 자세한 배점항목 및 항목별 점수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특별공급 신청서 및 자격입증 제출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해야 하고, 사업주체로부터 접수증을 발급받습니다(「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7조제1항 본문, 별지 제1호서식 및 별표 2).

▪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의 경우 사업주체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라 소득을 산정하는 때에는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및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7조제1항 단서, 제8조제8항 및 별표 2).

3.2. 임대주택 우선공급

3.2.1.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제도개요

▪ "국민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54조제1항제2호).

▪ 공공주택 사업자는 ① 다자녀가구, ② 철거민 등, ③ 노부모 부양·장애인 등, ④ 국가유공자 등, ⑤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⑥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⑦ 신혼부부·한부모가족, ⑧ 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에게 일정 공급비율내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제2호).

지원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라목 및 마목의 세대원에 해당하는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 또는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손자녀(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손자녀를 말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은 그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 제2호다목).

> ※ 다자녀 가구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LH 청약센터 사이트-청약-임대주택-임대가이드-

> 국민임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LH 콜센터(☎ 1600-1004)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공급 지원요건

소득요건

▪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소득요건을 갖춰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표 4 제1호 참조 및 제2호다목).

구분	요건
전용면적 50㎡ 미만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 위 기준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사람
전용면적 50㎡ 이상 60㎡ 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사람
전용면적 60㎡ 초과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사람

자산요건

▪ 다자녀가구로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 제3호바목 본문,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2조 본문 및 별표).

구 분	부동산가액 및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1)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110% 이하(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0% 이하이며,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함)	▪ 4천2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10% 이하(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0% 이하이며,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2) 1)의 가구중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자녀가 있는 경우	▪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120%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함)	▪ 4천2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20%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3)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함)	▪ 4천2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입주자 선정 및 신청

선정기준

▪ 다자녀 가구의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공급신청자를 먼저 입주자로 선정(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다목1)본문).

▪ 위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① 공급신청자의 나이 ② 부양가족의 수(태아 포함) ③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④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지의 여부 ⑤ 미성년자인 자녀(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손자녀 포함)의 수 ⑥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⑦ 중소기업 중 제조업종사 근로자(임원 제외)의 여부 ⑧ 사회취약계층 해당 여부 ⑨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피공제자 중 1년 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되었는지의 여부 또는 1년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인지 여부 ⑩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 과거에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의 여부 등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한 사유로 중복하여 합산하지 않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다목2) 및 나목).

> ※ 자세한 배점항목 및 항목별 점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나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로 신청해야 합니다(LH 청약센터 참조).

▪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 시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사람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 제3호마목).

▪ 우선공급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다자녀가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되어 선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후단).

3.2.2.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

제도개요

▪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에서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 중 일정비율을 20년 이상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다자녀가구에게 우선공급하는 제도입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5호 및 LH 청약센터 참조).

▪ 우선공급 물량은 장기전세주택 전체 건설량의 10% 범위이며, 그 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을 위한 가점·감점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지원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라목 및 마목의 세대원에 해당하는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 또는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손자녀(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손자녀를 말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경우, 그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장기전세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별표 4 제1호 및 제2호다목).

> ※ 다자녀 가구의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LH 청약센터 사이트-청약-임대주택-임대가이드-장기전세> 또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LH 콜센터(☎ 1600-1004)나 SH 콜센터(☎ 1600-3456)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공급 지원요건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라목 및 마목의 세대원에 해당하는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 또는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손자녀(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손자녀를 말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전단, 별표 4 제2호다목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2조 본문 및 별표).

▹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소득요건의 5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00%]를 더한 범위에서 별도로 소득요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후단 및 별표 4 제1호).

구분	요건
전용면적 50㎡ 미만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 위 기준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사람
전용면적 50㎡ 이상 60㎡ 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사람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사람

▹ 자산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이하 표에서 자녀는 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만 해당합니다.

구 분	부동산가액 및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1)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에 지역별 전세가격을 반영한 계수를 곱한 값의 110% 이하(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0% 이하이며,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함)	▪ 4천2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10% 이하(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0% 이하이며,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2) 1)의 가구중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자녀가 있는 경우	▪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에 지역별 전세가격을 반영한 계수를 곱한 값의 120%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함)	▪ 4천2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20%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3)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에 지역별 전세가격을 반영한 계수를 곱한 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함)	▪ 4천2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전용면적 85㎡ 초과인 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산요건 및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정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2조 본문 및 별표).

구 분	부동산가액 및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1)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에 지역별 전세가격을 반영한 계수를 곱한 값의 110% 이하(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0% 이하이며,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함)	▪ 4천2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10% 이하(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0% 이하이며,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2) 1)의 가구중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자녀가 있는 경우	▪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에 지역별 전세가격을 반영한 계수를 곱한 값의 120%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함)	▪ 4천2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20%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3)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에 지역별 전세가격을 반영한 계수를 곱한 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함)	▪ 4천2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입주자 선정 및 신청

선정기준

▪ 공공주택사업자는 위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공급 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을 위한 가점·감점 기준을 정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또는 납입횟수·금액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 수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과거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
-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이 때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한 사유를 중복하여 합산하지 않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제3호다목2) 참조).

▪ 위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 자격을 일부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로 신청해야 합니다(LH 청약센터 참조).

▪ 장기전세주택 공급신청 시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사람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하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및 별표 4 제3호마목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우선공급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다자녀가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되어 선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후단).

3.3.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3.3.1. 주택구입자금 대출

※ "다자녀가구" 지원대상의 범위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별로 다를 수 있고, 또한 지방정부별로 추가적인 지원을 각각의 지원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기준은 관련 기관 및 각 지역의 지방정부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개요

▪ 정부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대출을 우대해주고 있습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1조 및 제3조 참조).

▪ 주택도시기금으로는 근로자·서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택구입자금을 저리(低利)로 대출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다자녀가구에 대해 금리우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2026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Ⅳ. 융자조건, p.10~42).

지원내용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정조건 하에서 최고 3억 2천만원까지 융자해주는 제도입니다(「2026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p.15).

▪ 다자녀가구는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p.15).

구분	내용
대상자격	▪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7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 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대출신청자는 소득요건 없음
대상주택	▪ 85㎡ 이하 5억이하의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 2자녀 이상 가구는 85㎡ 이하 6억이하의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대출한도	▪ 일반: 2억(생초: 2억4천) ▪ 신혼: 3억2천 ▪ 2자녀 이상: 3억2천 * 토지임대부 사전청약 당첨자: 5억
연이율	▪ 2.85~4.15%
융자기간	▪ (0~1년 거치)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
우대조건 (최저금리 1.5%)	▪ 1자녀 가구 0.3%p 금리우대(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불가) ▪ 2자녀 가구 0.5%p 금리우대(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불가) ▪ 3자녀 이상 가구 0.7%p 금리우대(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불가)

※ 그 밖에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

지원내용

▪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정조건 하에서 최고 2억원까지 융자해주는 제도입니다(「2026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p. 23).

▪ 셋 이상의 자녀를 둔 세대는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p. 23).

구분	요건
대상자격	▪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6천만원(생초 연 7천만원)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대상주택	▪ LTV 70%이상 주택 또는 1년이상 임차중인 주택 ▪ 85㎡ 이하 6억원 이하의 주택
대출한도	▪ 최고 2억원 이내
연이율	▪ 3.1~3.3%
융자기간	▪ 1년거치 19년 상환, 3년거치 17년 상환, 5년거치 25년 상환
우대조건	▪ 3자녀 이상 세대는 0.5% 금리우대

※ 그 밖에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지원내용

▪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정조건 하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을 최고 7천만원까지 융자해주는 제도입니다(「2026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p.23).

▪ 셋 이상의 자녀를 둔 세대는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p.23).

구분	요건
대상자격	▪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대상주택	▪ 전용면적 60㎡ 이하, 1.5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LTV 50%한도)
대출한도	▪ 최고 7천만원 이내
연이율	▪ 3.1%
융자기간	▪ 2년이내 일시상환(9회 연장 가능)
우대조건	▪ 3자녀 이상 세대는 0.5% 금리우대

※ 그 밖에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3.3.2.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개요

▪ 정부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대출을 우대해주고 있습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1조 및 제3조 참조).

▪ 주택도시기금으로는 근로자·서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전세자금을 저리(低利)로 대출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다자녀가구에 대해 금리우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2026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Ⅳ. 융자조건, p.10~42).

지원내용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참조).

▪ 다자녀가구는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p.25~26).

구분	요건
대상자격	▪ 부부합산 총소득 5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대상주택	▪ 85㎡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의 주택 ▪ 2자녀 이상 가구는 85㎡ 이하,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
대출한도	▪ 수도권 최고 1억2천 이내, 지방 최고 8천 이내 ▪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최고 2억5천만원 이내, 지방 최고 1억6천만원 이내
연이율	▪ 2.5~3.5% ▪ 2자녀 이상 가구는 1.5~1.9%
융자기간	▪ 2년 이내 일시상환(최장 10년 가능) ▪ 단, 자녀가 있는 경우 한 자녀당 2년이 추가되어 최장 20년 가능
우대조건 (최저금리 1.0%)	▪ 1자녀가구 0.3%p 금리우대(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불가) ▪ 2자녀가구 0.5%p 금리우대(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불가) ▪ 3자녀 이상 가구 0.7%p 금리우대(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불가)

※ "다자녀가구" 지원대상의 범위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별로 다를 수 있고, 또한 지방정부별로 추가적인 지원을 각각의 지원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기준은 관련 기관 및 각 지역의 지방정부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양육 및 교육 지원

4.1. 양육 지원

4.1.1. 어린이집 이용시 혜택

어린이집 우선입소

적용대상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8조제1항 본문, 제8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4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제4호).

▪ 그 밖에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등이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8조제1항 본문).

> ※ 다자녀 가구의 어린이집 우선입소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 보육 우선제공 대상자 중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목당 각각 100점을 부여하고,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가 우선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제2호가목).

▪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자의 취업 여부, 자녀 수 등 보육의 우선 제공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제2호나목).

▪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한 순서대로 입소 순위를 부여합니다. 다만,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가 우선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제2호다목).

입소신청 및 주의사항

▪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은 아이사랑 홈페이지(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서울시보육포털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입소확정 후 신청자는 증빙서류를 입소일 전 7일(휴일 포함) 이내에 제출하여 입소순위에 대한 증빙을 하여야 합니다[「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p.75].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신청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이 취소됩니다(「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p.76).

보육료 지원혜택

지원대상

▪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다자녀가구의 0~5세 영유아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받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p.296-298).

지원내용

▪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보육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p.78~79).

▹ 기본보육: 09:00 ~ 16:00 (7시간)

※ 단, 지역별·어린이집별 사정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하여 9시~16시 전·후 30분 범위 내에서 보육시간 탄력 조정 가능

※ 기본보육 시간(09:00~16:00) 전·후 등원지도 시간과 하원지도 시간은 기본보육으로 간주

▹ 연장보육: 16:00 ~ 19:30

▹ 그 밖의 연장보육

① 야간연장 보육: 19:30 ~ 24:00

※ 05:30~07:30 사이에 이용하는 경우도 야간연장보육으로 간주

② 야간12시간 보육: 19:30 ~ 익일 07:30

③ 24시간 보육: 07:30 ~ 익일 07:30

④ 휴일보육: 일요일, 공휴일 07:30 ~ 19:30

▪ 보육료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p.297).

(단위: 원)

자격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적용시기)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0~5세	100%	0세반 ('26.1.1~)	584,000	584,000	876,000
			1세반 ('26.1.1~)	515,000	515,000	772,500
			2세반 ('26.1.1~)	426,000	426,000	639,000
			3~5세반 ('26.1.1~2.28.)	280,000	280,000	420,000
			3~5세반 ('26.3.1~)	280,000	280,000	420,000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가정·농어촌·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p.296).

▪ 연장보육 서비스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과 아동의 부모 및 가구의 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그 필요 정도를 판단하게 되는데, 다자녀가구의 경우에는 자녀가 2명 이상이라는 다자녀가구의 특성만 증빙하면 부모 모두의 필요사유에 대한 판단 없이 연장보육 자격이 부여됩니다(「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p. 298).

지원신청

▪ 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복지로 홈페이지 참조).

> ※ 그 밖에 어린이집의 일반운영내용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어린이집 운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1.2.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혜택

아이돌봄 지원사업이란?

▪ 정부는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1조 참조).

▪ “아이돌봄 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아동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 참조).

▪ 다자녀,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서 돌봄을 제공하며, 이용요금은 소득수준 등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2026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제1장 사업개요, p.15~24).

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자

▪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가구의 보호자로서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의 자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의2제8호 및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3항).

> ※ 다자녀 가구의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이돌봄서비스 콜센터(☎ 1577-2514)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하기

이용대상 및 시간

▪ 다자녀가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별 대상 및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19).

서비스 구분	내용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1회 3시간 이상 신청
시간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1회 2시간 이상 신청** **※ 기본형 및 종합형으로 구분**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감염병에 감염된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의 아동 ▪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1회 2시간 이상 신청
기관연계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0세~12세 아동 ▪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1회 2시간 이상 신청

이용금액 및 소득기준별 지원금액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및 종합형의 이용금액 및 소득기준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1.가.).

[기본형]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2,790원	10,872원	1,918원	10,232원	2,558원
나형	75%초과~ 120% 이하	12,790원	7,674원	5,116원	6,396원	6,394원
다형	120%초과~ 150% 이하	12,790원	3,838원	8,952원	3,198원	9,592원
라형	150% 초과~ 250% 이하	12,790원	1,920원	10,870원	1,280원	11,510원
마형	250% 초과	12,790원	-	12,790원	-	12,790원

※ A형은 2019. 1. 1. 이후 출생 아동, B형은 2018. 12. 31. 이전 출생 아동에 해당됩니다.

[종합형]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6,620원	10,872원	5,748원	10,232원	6,388원
나형	75%초과~ 120% 이하	16,620원	7,674원	8,946원	6,396원	10,224원
다형	120%초과~ 150% 이하	16,620원	3,838원	12,782원	3,198원	13,422원
라형	150% 초과~ 250% 이하	16,620원	1,920원	14,700원	1,280원	15,340원
마형	250% 초과	16,620원	-	16,620원	-	16,620원

※ A형은 2019. 1. 1. 이후 출생 아동, B형은 2018. 12. 31. 이전 출생 아동에 해당됩니다.

▪ 영아종일제서비스의 이용금액 및 소득기준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1.가.).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2,790원	10,872원	1,918원
나형	75%초과~ 120% 이하	12,790원	7,674원	5,116원
다형	120%초과~ 150% 이하	12,790원	3,838원	8,952원
라형	150% 초과~ 250% 이하	12,790원	1,920원	10,870원
마형	250% 초과	12,790원	-	12,790원

▪ 질병감염아동서비스의 이용금액 및 소득기준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1.가.).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5,340원	13,040원	2,300원	12,272원	3,068원
나형	75%초과~ 120% 이하	15,340원	9,204원	6,136원	7,670원	7,670원
다형	120%초과~ 150% 이하	15,340원	7,670원	7,670원	7,670원	7,670원
라형	150% 초과~ 250% 이하	15,340원	7,670원	7,670원	7,670원	7,670원
마형	250% 초과	15,340원	7,670원	7,670원	7,670원	7,670원

※ A형은 2019. 1. 1. 이후 출생 아동, B형은 2018. 12. 31. 이전 출생 아동에 해당됩니다.

이용신청

▪ 아이돌봄 서비스의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보호자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신청서나 다음의 서류는 전자문서로 갈음하거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소득·재산 신고서 및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관할 소속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명 자료
-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제공동의서
-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4.2. 교육 지원

4.2.1. 국가장학금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혜택

지원개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사람들도 고등교육 기회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를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 참조).

▪ "장학금"이란 무상 또는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하여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등록금, 학업장려비 및 생활비(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체재비, 교통비 등) 등의 금품을 말합니다(「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3조제1호).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가구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으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에게 지원됩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다자녀 국가장학금> 참조).

▪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학생은 다음의 심사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국가장학금Ⅰ유형> 참조).

구분		성적기준
성적기준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에 12학점을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기초/차상위: 직전학기에 12학점을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장애인: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C학점 경고제: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다자녀가구" 지원대상의 범위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별로 다를 수 있고, 또한 지방정부별로 추가적인 지원을 각각의 지원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기준은 관련 기관 및 각 지역의 지방정부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의 국가장학금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 소득구간(분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지원됩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다자녀 국가장학금> 참조).

구분	신청자 본인 서열이 첫째, 둘째		신청자 본인 서열이 셋째 이상
	1학기 최대 지원금액	2학기 최대 지원금액	
기초/차상위	전액	전액	전액
1구간	305만원	610만원	
2구간	305만원	610만원	
3구간	305만원	610만원	
4구간	252.5만원	505만원	
5구간	252.5만원	505만원	
6구간	252.5만원	505만원	
7구간	232.5만원	465만원	
8구간	232.5만원	465만원	
9구간	67.5만원	135만원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100만원 (연간 최대지원금액) 200만원

신청방법 및 지급방식

-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우선지원해야 하며, 중복수혜는 불가합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다자녀 국가장학금> 참조).



※ 관련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4.2.2.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개요

▪ 정부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합니다(「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조제1호).

지원대상

▪ 다자녀(3인 이상) 가구는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9조제1항 및 「2026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항 참조).

> ※ 다자녀 가구에 지원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관해서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안내-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국번없이)1599-2000]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1항 참조).

구분	내용
자격요건	▪ **신입생: 대학 및 전문대학 진학 예정자 중 아래의 소득요건에 해당하면서 대학의 입학허가를 획득한 자** **▪ 재학생: 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생 중 아래의 소득요건에 해당하면서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소속대학의 학기당 취소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에는 소속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
	※ 다자녀가구 학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 ※ 소득요건 -등록금대출: 제한없음 -생활비대출: 8구간 이하인 자. 단, 학자금지원 9구간인 경우 긴급생계곤란(부모 또는 본인의 파산ㆍ개인회생ㆍ폐업 등)인 경우 신청 가능
대상대학	▪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관한 협약을 맺은 대학
연령제한	▪ 만 35세 이하[다만, 전문대학 계약학과(채용조건형) 및 선취업 후 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 45세 이하]
대출금액	▪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 ▪ 생활비: 학기당 200만원
대출금리	▪ 1.70%

신청방법

▪ 전자서명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2026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제도개요

▪ 정부는 농촌지역 학생의 학습기회를 확대하고 농촌주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촌지역 교육환경의 개선 등을 위해 농어촌출신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습니다(「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3조 참조).

▪ "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은 농어촌출신 학부생 및 대학(원)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줌으로써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대출제도입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안내-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참조).

지원대상

▪ 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지원자격요건을 갖춘 3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가구는 지원순위 1순위에 해당합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안내-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참조).

지원내용

▪ 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안내-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참조).

구분	내용
자격요건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학부생 및 대학원생) ▪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 ▪ 농식품인재 지원대상학과(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에 재학, 복학, 입학 예정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 미혼자의 보호자는 부모이고, 기혼자의 보호자는 배우자로 봄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해당 학교의 '입학 허가'는 성적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학교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C학점(70점/100점 만점) 이상 성적 기준 적용
대출금리	▪ 무이자
대출가능 금액	▪ 해당 학기 대학(원)에서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단,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함 ※ 최소 대출 가능 금액은 10만원 이상이며, 농촌학자금대출로 생활비는 대출불가함(단, 취업후 상환/일반 상환 생활비대출, AI학업장려 학자금대출 이용가능)
대출가능 횟수	▪ 재학 대학(원)의 정규학기 수만큼 대출 가능

지원절차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안내-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참조).



5. 공공요금 감면

5.1. 전기 및 도시가스 등 요금 감면

5.1.1. 전기료 감면

전기료 감면

감면대상

▪ 전기판매사업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 전단).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는 전기요금을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기본공급약관」 제67조제6항제4호가목).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3인 또는 "손(孫)"3인으로 표시된 가구를 말하며,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같은 가구로 봅니다(「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2항제1호).

> ※ 다자녀가구의 전기요금 할인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기상담고객센터[☎(국번없이)123]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면금액

▪ 3자녀가구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하면 다음과 같이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항).

대상	감면내용
다자녀가구	▪ 월 전기요금의 30%(16,000원 한도 내에서만 감면됨)

신청방법

▪ 이에 따라 전기요금을 할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신청하면 됩니다(「기본공급약관」 제67조제6항제4호가목 및 별지 제4호서식).

▪ 그 외 한국전력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지사 방문, 우편 및 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참조).

> ※ 그 밖에“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셋째 자녀 출산 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다자녀가구 전기료 감면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5.1.2. 도시가스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혜택

감면대상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위탁가정에서 일시보호조치를 받는 위탁아동은 제외)”가 3명 이상이거나 “손자녀(위탁아동은 제외)"가 3명 이상인 가구는 다자녀가구에 해당되어, 도시가스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의3제1항,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및 별표 9의2제2호가목 본문).

▹ 다만, 18세 미만의 ”자녀”또는 “손자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그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의2제2호가목 단서).

감면한도

▪ 다자녀가구는 다음의 한도를 기준으로 도시가스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이 감면됩니다(「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제1항,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제1항 ·제2항 및 별표 1).

(단위: 원/월)

구분	취사난방용						취사용		
	동절기(12~3월)			동절기제외(4월~11월)					
	계	도매	소매	계	도매	소매	계	도매	소매
다자녀가구	18,000	16,200	1,800	2,470	1,980	490	420	290	130

신청방법

▪ 다자녀가구는 신규로 도시가스요금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감면신청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의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제3조제1항제2호).

▹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신청서(「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 동의서(「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셋째 자녀 출산 시 출생신고와 동시에 다자녀가구 도시가스요금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제9조제2항 및 별표 2).

· 온라인 신청: 정부 24 홈페이지(https://www.gov.kr/)

· 방문 신청: 출생자의 주민등록주소지(주민등록예정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요금 감면 적용

▪ 도시가스요금 감면은 신청한 다음 날부터 적용되며, 감면한도는 적용일수에 따라 일할기준으로 계산됩니다(「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제6조제1항 본문).

▪ 도시가스요금 감면을 받은 다자녀가구는 자격변동, 이사, 사망 또는 에너지원의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제7조제1호).

감면자격 변동에 대한 조치

▪ 도시가스요금 감면을 받은 다자녀가구는 신청연월일부터 매년마다 자격증명서를 갱신 후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제출해야 하며, 갱신·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면이 중지됩니다(「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제8조제2항).

▪ 도시가스요금 감면을 받은 다자녀가구는 주민등록표 미제출, 변동사항 통보 누락 등으로 인해 부당하게 감면을 받은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하며, 이 경우 정상요금과의 차액과 잘못 감면된 기간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 ※ 그 밖에 다자녀가구의 도시가스요금 감면 관련 문의는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전자민원> 또는 지역별 도시가스회사<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국민소통-고객지원제도-에너지복지제도-도시가스사 안내>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5.1.3. 난방비 감면

우리 집 난방방식 확인하기

중앙난방 또는 개별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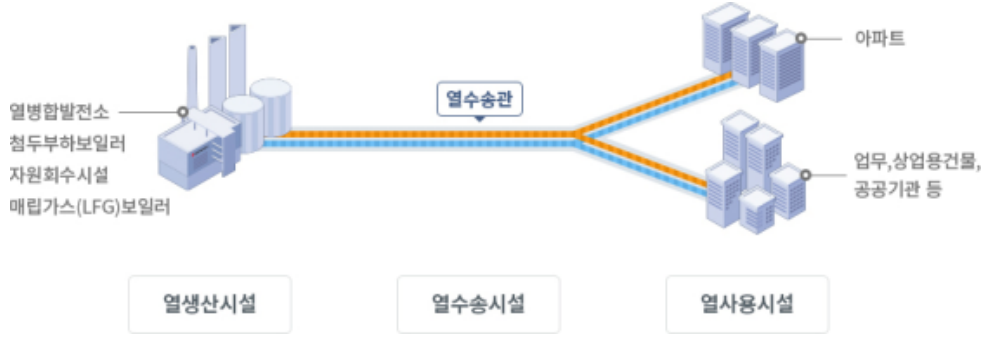
▪ 중앙난방은 아파트 단지 내의 중앙기계실에서 보일러를 가동하여 각 세대별로 난방을 공급하는 방식이며, 개별난방은 각 세대별로 보일러를 설치하여 개별적으로 난방하는 방식으로, 주로 도시가스를 이용합니다.

▪ 도시가스를 이용한 중앙난방 또는 개별난방을 이용하고 있는 다자녀가구의 경우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도시가스요금으로서 난방비를 감면받습니다.

> ※ 도시가스 요금감면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다자녀가구』의 <공공요금 감면-전기 및 도시가스 등 요금 감면-도시가스 요금감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난방

▪ 아파트, 업무, 상업용 건물들에 개별 열생산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열병합발전소 등의 대규모 열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열(온수)을 대단위 지역에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주로 신도시나 계획도시에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출처: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사업소개-주요사업-지역난방 참조>

▪ 지역난방을 이용하고 있는 다자녀가구의 경우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공급규정」에 따라 난방비를 감면받습니다.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

감면대상

▪ "에너지 복지요금 제도"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지역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복지지원 대상 및 다자녀가구의 지난 1년간 에너지복지요금을 대상 자격별 월정액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참조).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가 3명 이상 또는 "손(孫)" 이 3명 이상으로 표시된 다자녀가구(위탁아동을 포함함)는 난방비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제1항 본문 및 「열공급규정」 제52조제1항제4호).

> ※ 다자녀가구의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이용하시거나 전화[☎(국번없이)1688-2488]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다자녀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www.kdhc.co.kr)-고객마당-열-지원사업-요금지원제도-제도안내 참조].

구분	내용
지원금액	▪ 월 4,000원
지원방법	**▪ 전년도 4월~올해3월에 대한 ①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②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8~10월 사이에 신청시 등록한 계좌로 최대 12개월분을 입금** **※ 다만, 지역난방 아파트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지원되며, 월 1/2이상 거주 및 자격 보유시 해당 월 지원대상으로 인정**

신청방법

▪ 요금감면을 받고자하는 사람은 지역난방 에너지복지 지원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이후 가구원수, 자격사항, 주소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열공급규정」 제52조제2항 및 별지 제9호서식).

▪ 요금감면은 연1회 소급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가 열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거주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합니다. 거주기간 산정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월의 1/2이상 또는 15일이상 거주한 경우 1개월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열공급규정」 제52조제3항).

※ 그 밖에“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셋째 자녀 출산 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다자녀가구 지역난방비 요금경감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5.2. 공공시설 요금감면

5.2.1. 수목원 등 이용료 감면

국립수목원 관람료 면제

면제대상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다둥이) 카드를 소지한 가구 또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구는 국립수목원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 및 별표 1, 15).

수목원 운영시간

▪ 수목원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4항 본문 및 제2조제2항).

구분	4월 ~ 10월(하절기)	11월 ~ 3월(동절기)	비고
관람시간	09:00~18:00	09:00~17:00	▪ 1일 예약가능한 차량대수는 오전주차와 오후주차로 나누어 각각 300대 이하(1일 입장인원 3,500명 이하) ▪ 대중교통자전거 또는 보행으로 입장하는 경우에는 1일 입장인원 4,500명 이하
휴원일	▪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연휴, 1월·2월·12월의 일요일 ▪ 그 밖에 국립수목원장이 국립수목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임시 휴원일		

입장방법

▪ 수목원 관람을 위한 입장은 방문하기 전 전화 또는 수목원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통해 주차장 이용차량을 사전 예약한 사람에 한하며, 입장예약 및 예매시간은 1일 예약가능한 차량대수의 범위 내에서 입장예정일 1개월 전부터 당일 입장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 해야 합니다(「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제3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예약 없이 입장할 수 있습니다(「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 단서).

- 대중교통·자전거 또는 보행으로 입장하는 경우
-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로서 국립수목원장이 입장을 허용하는 경우

▪ 다자녀 가족에 해당하여 입장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증명서 등)의 제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

※ 다자녀가구의 국립수목원 입장료 면제기준에 대해서는 <국립수목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031)540-2000]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감면대상

▪ "자연휴양림"이란 국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을 말합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다자녀 가정이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제3항 및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제6조제1항제4호).

▪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합니다(「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제2조제14호).

감면내용

▪ 다자녀 가정은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요금을 다음과 같이 감면받습니다(「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별표 1).

구분	이용요금
입장료	▪ 면제
객실료	▪ 1가정 1실에 한해서 객실요금 할인(비수기 주중: 30%, 성수기 및 주말: 10%)
야영시설 이용료	▪ 이용요금 할인(비수기 주중: 20%, 성수기 및 주말: 10%)

감면방법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다자녀 가정은 숲나들e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시 인증절차를 거쳐 감면받거나, 현장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 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숲나들e 홈페이지-참여마당-자주하는 질문 참조).

※ 다자녀가구의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기준에 대해서는 <숲나들e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국번없이)1588-3250]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5.2.2. 철도운임 할인

다자녀 행복 서비스

할인대상

▪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은 운임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철도사업법」

제9조의2제1항 및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참조).

※ "다자녀가구" 지원대상의 범위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별로 다를 수 있고, 또한 지방정부별로 추가적인 지원을 각각의 지원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기준은 관련 기관 및 각 지역의 지방정부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가구의 철도운임 할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철도고객센터(☎ 1588-7788)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할인범위

▪ 다자녀가구에 대한 운임할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참조).

구분	이용요금
할인범위	▪ 등록된 부모와 25세 미만의 자녀 중 3명 이상이 함께 열차 좌석 이용 시 할인 적용되며, 등록 자녀수에 따라 ①(25세 미만 자녀 2명) 이용인원 중 어른의 운임을 30% 할인, ②(25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이용인원 중 어른의 운임을 50% 할인 ▪ 자녀가 13세 미만인 경우 연령에 따라 어린이 할인(어른 운임의 50% 할인), 유아 할인(좌석 지정 시 어른 운임의 75% 할인) 적용 ▪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없음 ▪ 최저운임 이하로는 할인불가 ▪ 할인은 운임에만 적용하고 요금은 미적용(특실/우등실은 운임, 요금으로 구분)
구매범위	▪ 등록된 가족 구성원에 한하여 1일 2회, 1개월 8회 이용 가능

이용방법

▪ 정부24 '행복출산'에서 다자녀 등록을 한 뒤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다자녀 행복 인증을 받으면 할인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참조).

▹ 다만, 온라인 인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참조).

※ 그 밖에 다자녀가구 철도운임 할인서비스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2.3.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다자녀 우대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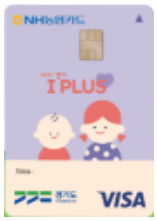
다자녀 우대카드란?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자녀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녀가 여러 명(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주로 2~3명)인 가구에 대해 마트, 식당, 레저·문화시설, 유·아동 관련 업체 이용 시 할인·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인구전략기본법」 제4조, 제15조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참조).

다자녀 우대카드의 종류

▪ 다자녀 우대카드의 종류에는 ① 은행연계형 카드 외에 지방자치단체 별로 운영 중인 ② 모바일(앱카드) 및 ③ 신분 확인용 전용 카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자녀 우대카드를 신청하려는 경우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지방자치단체별 모바일 앱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비금융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카드명	카드이미지	지역	카드명	카드이미지
서울 특별시	다둥이 행복카드		강원 특별 자치도	강원아이 키움카드	
부산 광역시	가족사랑카드		충청 북도	다자녀 행복카드	
인천 광역시	아이모아카드		충청 남도	다자녀 행복 키움카드	
대구 광역시	아이조아카드		전북 특별 자치도	아이조아카드	
대전 광역시	꿈나무 사랑카드		전라 남도	다자녀 행복카드	

광주 광역시	다자녀 행복카드		경상 북도	다복가정 희망카드	
울산 광역시	다자녀 사랑카드		경상 남도	경남 아이다누리 카드	
경기도	아이 플러스 카드		제주 특별 자치도	제주 아이사랑 행복카드	
세종 특별 자치시	다자녀 아이사랑 카드				

※ 다자녀 우대카드의 기준, 혜택 및 절차는 각 지역별로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각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우대카드의 모바일(앱카드) 및 신분 확인용 전용 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카드명	카드이미지	지역	카드명	카드이미지
서울 특별시	다둥이 행복카드		경기도	경기똑D 도민카드	
부산 광역시	가족사랑카드				

※ 신분확인용 카드(앱카드)의 시행 여부와 운영 방식은 지역별로 다르며, 설치 및 사용 방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

6.1. 자동차 취득세 감면

6.1.1. 자동차 취득세 경감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

▪ 이 때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

> ※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경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면내용

▪ 위 기준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 중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 및 제177조의2제1항제1호가목 참조).

자동차종류	대상차량	감면세액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 7명 이상~10명 이하 승용자동차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 공제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위 기준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 중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

자동차종류	대상차량	감면세액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 7명 이상~10명 이하 승용자동차	취득세 50% 경감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50% 경감,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70만원 공제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취득세 50% 경감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취득세 50% 경감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취득세 50% 경감

▪ 다만, 다자녀 양육자로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 또는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단서, 제2항 단서 및 제3항제3호).

감면신청

▪ 취득세(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지방세기본법」 제5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청구 시에는 청구하는 때)에 감면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제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 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제2항).

그 밖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체취득 및 소유권 이전시 감면혜택

▪ 다자녀 양육자가 위의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도 위의 기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3항).

- 대체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

> ※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란?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란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 간 이전하는 경우는 대체취득으로 보지 않음)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함)를 의미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의2).

취득세 감면의 유지

▪ 다자녀 양육자 조건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동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5항).

-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매도되지 않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중고자동차는 제외함)
-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취득세의 추징

감면취득세의 추징

▪ 위의 사유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4항 본문).

▪ 다만, 다자녀 양육자 조건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4항 단서).

6.2. 세액공제

6.2.1.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제도

"자녀세액공제제도"란?

▪ 종전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할 때 기본공제 외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다자녀추가공제를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부터는 이를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합니다.

공제금액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공제대상자녀"라 함) 및 손자녀로서 13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1항).

자녀 수	공제금액
1명	▪ 연 25만원
2명	▪ 연 55만원
3명 이상	▪ 연 55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을 합한 금액

※ 다만, 자녀세액공제의 연령기준에 관한 규정은 2026년 4월 2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며, 2026년부터 2029년까지의 과세기간분의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기준에 관하여는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소득세법」 부칙 제2조(법률 제21548호, 2026. 4. 21. 개정)].

과세기간	연령기준
2026. 1. 1. ~ 2026. 12. 31.의 과세기간분	▪ 9세 이상
2027. 1. 1. ~ 2027. 12. 31.의 과세기간분	▪ 10세 이상
2028. 1. 1. ~ 2028. 12. 31.의 과세기간분	▪ 11세 이상
2029. 1. 1. ~ 2029. 12. 31.의 과세기간분	▪ 12세 이상
※ 다만, 2017. 1. 1. ~ 2017. 12. 31. 사이에 출생한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 및 손자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과세기간에 출산 또는 입양 신고를 한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3항).

구분	공제금액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

신청방법

▪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해당되는 자녀세액공제항목을 기입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자녀 수에 따라 추가로 세액을 공제해주는 자녀세액공제제도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납세자권익24 홈페이지> 인터넷 상담이나 국세상담센터(☎ 126)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6.3.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6.3.1.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출산크레딧"이란?

▪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 자녀 출산 시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추가로 인정함으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연금정보-알기쉬운 국민연금-연금 종류 및 청구-연금급여-급여의 특징 참조).

출산크레딧의 내용

▪ 자녀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국민연금법」 제19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다음과 같은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됩니다(「국민연금법」 제19조제1항).

1. 2008. 1. 1. 이후 둘째 자녀 이상 얻은 경우(추가 가입기간 상한 50개월 적용)

자녀 수	기간
2명	▪ 12개월
3명 이상	▪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 합산** ※ **자녀가 3명인 경우: 30개월** **자녀가 4명인 경우: 48개월**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50개월(추가 가입기간 상한)**
※ 단, 2008. 1. 1. ~ 2025. 12. 31. 사이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이 2026. 1. 1. 이후 추가로 얻은 자녀에 대해서는 추가 가입기간의 상한(50개월)을 적용하지 않음	

2. 2026. 1. 1. 이후 첫째 자녀를 얻은 경우(추가 가입기간 상한 없음)

자녀 수	기간
1명	▪ 12개월
2명	▪ 24개월
3명 이상	▪ **24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 합산** ※ **자녀가 3명인 경우: 42개월** **자녀가 4명인 경우: 60개월** **자녀가 5명인 경우: 78개월**

※ 이 때의 자녀는 ① 「민법」에 따른 친생자(親生子), 인지된 출생자, 양자(養子) 및 친양자(親養子), ②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된 자녀를 말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추가 가입기간의 제한

▪ 출산크레딧 제도에 따라 부 또는 모(양부모를 포함)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수급권 취득 당시 자녀가 ①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었거나 ② 파양(罷養)된 경우에는 해당 부 또는 모(양부모 포함)의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할 수 없습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한 자녀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할 수 없습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 위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인 경우에는 부부의 합의에 따라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가입기간에만 산입되며,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균등 배분해서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됩니다(「국민연금법」 제19조제2항 전단).

신청방법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나 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때에 신청하면 출산크레딧 추가 가입기간을 포함해서 산정된 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참조).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하며, 그 밖에 우편·팩스·홈페이지 인터넷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연금정보-알기쉬운 국민연금-연금 종류 및 청구-연금급여-급여의 청구 참조).

※ 그 밖에 출산크레딧 제도의 내용 및 국민연금의 종류 등에 관해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연금정보-알기쉬운 국민연금-연금 종류 및 청구-연금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